

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증개정법률

법률 제5,958호 1999. 3. 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입주자가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게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 그 시행자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1999. 5.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
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
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주택회보